

교무위원회 규정

(제정 1983. 7. 15.)

(전부개정 2019. 10. 1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「학칙」 제63조에 따라 설치한 교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①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사운영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
2. 교육, 연구, 산학협력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3. 직제 및 학생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
4. 대학헌장, 학칙 및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주요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공람하여 교원, 직원, 조교 및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2조(조직)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각 대학원장, 학장, 본부장, 처장, 산학협력단장, LINC3.0사업단장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3.29.>

②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의장 유고시에는 부총장, 교무처장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.

제3조 삭 제

[본조삭제 2020.9.1.]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교무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학장 1명을 포함한 출석위원 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④ 교무위원회는 회의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내 통신망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교무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교무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5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4-0-2-2 교무위원회 규정

이 규정은 198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3.29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